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7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권성동·서천호·백종헌

우재준 • 윤한홍 • 정성국

김예지 · 임종득 · 강선영

김대식 • 박상웅 • 곽규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주식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억제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

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제10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3조(벌칙) ①・② (생 략)	제443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③ 제1항제10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
	<u>항의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한다</u> .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